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 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데이터 전담부서 지정·운영을 위해 해당부서 명칭을 “정보관리과”에서 “데이터관리과”로 변경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의 행정직렬 정원 4명(8급 4명)과 전산직렬 정원 2명(8급 2명)을 의료기술직렬 정원 6명(8급 6명)으로 전환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중 2명(8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고, 증원 인력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의 복수직급 보임 직위와 과장 직위 보임 직렬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정보기획과·정보관리과 및 정보관리팀”을 “병역판정검사과·병역조사과·정보기획과·데이터관리과 및 정보보호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관리과장”을 “데이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신체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을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사무관”을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병역판정검사과장: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제15조제4항제2호 단서 중 “강원지방병무청”을 “서울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을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서울지방병무청은 행정사무관으로, 강원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서울지방병무청은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조사과장: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제39조제1항 중 “행정사무관”을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병역판정검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고객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을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병역판정검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고객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을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병역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을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2022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2월 25일”을 “2024년 2월 25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01”을 각각 “1,504”로 하고, 의료기술주사보 “37”을 “40”으로 하며, 행정서기 “321”을 “317”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5”를 “14”로 하며, 의료기술서기 “13”을 “19”로 하고,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를 “11”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06”을 각각 “1,509”로 하고, 의료기술주사보 “37”을 “40”으로 하며, 행정서기 “324”를 “32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5”를 “14”로 하며, 의료기술서기 “16”을 “22”로 하고,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를 “11”로 한다.

별표 7 1)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2)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6월 9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8 중 1. 제4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2022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8일”로 하고, 2. 제4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5일) “2022년 2월 25일”을 “2024년 2월 25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03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05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병역자원국) ① (생 략)	제7조(병역자원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병역자원국에 <u>병역판정검사 과 · 병역조사과 · 정보기획과 · 정보관리과 및 정보관리팀</u> 을 두 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 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 고,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 로 보한다.	② ----- <u>병역판정검사과 · 병역조사과 · 정보기획과 · 데 이터관리과 및 정보보호팀</u> ----- ----- ----- ----- -----.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정보관리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u>데이터관리과</u> 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중앙신체검사소) ① (생 람)	제10조(중앙신체검사소) ① (현행 과 같음)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운영지원 과 및 신체검사과를 두되, <u>운영 지원과</u> 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 무관으로, <u>신체검사과</u> 장은 서 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② ----- ----- <u>각 과장은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 관</u> -----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④ (생략)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 ③ (생략)

④ 각 과장 및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다음 각 호의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생략)

2. 병역판정검사과장: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다만, 강원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은 행정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3. 고객지원과장: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은 행정사무관으로, 강원지방병무청, 충북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1. (현행과 같음)

2. 병역판정검사과장: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서울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서울지방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은

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은 행정사
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4. (생략)

<신설>

제39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행정사
무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인천병무지청에 운영지
원과·병역판정검사와·현역입
영과·동원관리과·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운영지
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
무관으로, 병역판정검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
관으로, 고객지원과장은 행정사
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행정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
사무관 -----.

4. (현행과 같음)

5. 병역조사과장: 서기관·기술
서기관·행정사무관·의료기
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제39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
----- 행정사무
관·의료기술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

신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⑦ (생략)

제40조 (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 병역판정검사와 · 현역입영과 · 동원관리과 · 사회복지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병역판정검사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고객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⑦ (생략)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 · 의
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
관으로 보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병역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
한다.

②·③ (생략)

제48조(한시정원) ① 병역관정검
사 중 참복결핵 검진을 실시하
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
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
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둔다.

②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5
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
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둔다.

③ (생략)

국방부령 제103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의료기
술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
송통신사무관-----.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한시정원) ① -----

----- 2024년 2월 28일-----

-----.

② -----

- 2024년 2월 25일-----

-----.

③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03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의료기술서기 2명)은 <u>2022</u> <u>년 12월 31일</u>까지 존속한다.	----- ----- <u>2022</u> <u>년 6월 30일</u>-----.
국방부령 제105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국방부령 제105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삭 제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의료기술 서기 1명)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② ----- ----- - <u>2022년 6월 30일</u>----- -.

신 · 구정원대비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501</u>		<u>1,504</u>	+ 3
일반직	계		<u>1,501</u>		<u>1,504</u>	+ 3
		·		·	·	
		·		·	·	
의료기술주사보			<u>37</u>		<u>40</u>	+ 3
		·		·	·	
행정서기			<u>321</u>		<u>317</u>	-4
		·		·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15</u>		<u>14</u>	-1
		·		·	·	
의료기술서기			<u>13</u>		<u>19</u>	+ 6
전산서기 또는			<u>12</u>		<u>11</u>	-1
방송통신서기						
		·		·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06	1,509	+ 3
일반직 계	1,506	1,509	+ 3
의료기술주사보	37	40	+ 3
행정서기	324	320	-4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5	14	-1
의료기술서기	16	22	+ 6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	11	-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대체역 심사위원회 조사1과	6명(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u>2022년 12월 31일까지</u>
2) 대체역 심사위원회 조사2과	5명(4급 1명, 5급 4명)	<u>2022년 12월 31일까지</u>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8조 관련)

1. 제4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8일)

총 계	9
일반직 계	9
의료기술서기	6
의료기술서기보	3

2. 제4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5일)

총 계	1
일반직 계	1
행정서기보	1